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9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9일
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자살예방법」이 교육감에게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·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, 법률의 위임 없이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치입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7조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”를 “지정·운영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
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 중 “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”를 “지정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7조(학생 자살예방기관 의 지정·운영) 교육 감은 학생자살 예방사 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학생 <u>자살 예방기관을 지정·운영 할 수 있다.</u>	제7조(학생 자살예방기관 의 지정·운영) ----- ----- ----- ---- <u>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 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 인 및 단체 중에서 학 생 자살예방기관을 지 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	제7조(학생 자살예방기관 의 지정·운영) ----- ----- ----- ----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 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 인 및 단체 중에서 학 생 자살예방기관을 <u>지 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자살예방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·운영)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	제7조(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·운영) ----- ----- <u>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